의 약	안 번	호	제		호	
의		결	2024	. 4	•	•
연	월	일	(제		회)	

의 결사항

독 점 규 제 및 공 정 거 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 . 4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('24.2.9)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변동사항 제외(시행령 제 34조 제3항 제2호 삭제)
  - 비상장회사 공시사항 중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(법 제27조 제1항 제1호)하는 법률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당해 항목을 삭제함
- 나.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 마련(시행령 제9 4조 제3호 관련 별표 9)
  -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 여부, 위반의 정도, 위반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에

# 대한 과태료 면제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

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관계부처 의견조회 진행예정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4. 18. ~ 5. 28.)

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규제심사 비

대상

대통령령 제 호

##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 제3항 제2호(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)를 삭제한다.

제94조 제3호 관련 별표 9의 1. 일반기준 다.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,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.
  - 1)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, 개별회사·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로서 공시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("영업일"이란 공휴일, 토요일, 「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.이하 같다.) 이내에 이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
  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시 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가) 단순 합계, 비중 등을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나 해당

공시내용에서 계산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

- 나) 공정거래법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공시에 해당하면서 공시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로서 선행 공시로 진실한 공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
- 다) 공정거래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시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공시사항 중 5억원 미만의 상품 또는 용역 거래와 관련된 공시사항 일부를 누락하여 공시한 경우
- 3) 그 밖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서 공시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)	제34조(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)
①・② (생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③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"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2.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항② ~ ⑤ (생 략)별표 9(제94조제3호 관련)	2.       ( 삭 제 )        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        별표 9(제94조제3호 관련)
1. 일반기준	1. 일반기준
<u>&lt;신 설&gt;</u>	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, 장래의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반 행위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.
	1)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, 개별회사·공익법

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 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로서 공시기한이 지난 후 10영업일("영업일"이 란 공휴일, 토요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.) 이내에 이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
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 되고 공시기한이 지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이를 스스로 시정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
- 가) 단순 합계, 비중 등을 계산

  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

   하였으나 해당 공시내용에

   서 계산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
- <u>나) 공정거래법 제26조부터 제2</u> <u>9조까지에 따른 공시에 해당</u> 하면서 공시사항이 중복되

	는 경우로서 선행 공시로 진실한 공시내용을 알 수 있 는 경우
	다) 공정거래법 제28조제1항제8 호에 따른 공시로서 공정거 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공 시사항 중 5억원 미만의 상 품 또는 용역 거래와 관련 된 공시사항 일부를 누락하 여 공시한 경우
	3) 그 밖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에 의한 것으로서 공시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이 희박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< 신 설 >	부 칙 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8 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# 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

연 락 처

(044) 200 - 4935